

본회 질의내용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종전) 직전년도 정기결산서로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개정) 직전년도 정기결산서(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대상)로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질의내용(요약)

1.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의 적용가능성 여부

□ 비외감기업이 작성하는 법인세법상 3종의 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만으로도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결론을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2. 검토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

□ 상법상 확정된 비외감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3. 검토대상 재무제표의 기준 회계연도

□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검토대상 회계연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동일 기업이라도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은 매년 변동하므로 검토대상 회계연도가 언제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감사인은 어느 시점의 결산서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